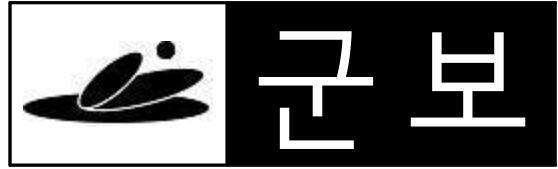


#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705호 2023. 5. 10.(수)

##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3-113호 :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 2
- 예산군 고시 제2023-114호 : 주택건설사업계획 7차 변경 승인 고시 ..... 3

##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58호 : 공시송달공고 ..... 5

## 입 법 예 고

- 예산군 공고 제2023-835호 :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7
- 예산군 공고 제2023-852호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8

회									
람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실 ☎ 339-7142)

예산군 고시 제2023-113호

##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문화가 있는 쾌적한 농촌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  
 화를 위한 신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한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시행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제61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 예 산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예당호 주변 신규마을조성사업(황계지구)
2. 사업의 목적 : 문화가 있는 쾌적한 농촌 주거공간 조성으로 도시민 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신규 농촌마을 조성
3. 사업비 : 8,109백만원(지원금 1,298, 자부담 6,811)
4. 주요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177-2번지 일원(변경)
  - 나. 면 적 : 24,996㎡(변경)
  - 다. 사업내용 : 전원주택 34세대 조성
5. 사업시행자 : (주)황계지구신규마을
6. 사업시행기간 : 2020년~2023년(4개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소	지번					
1	신양면 황계리	177-2	임	24,996	24,996	황계지구신규마을 정비조합 외 구성원	동의

8.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 041-339-7570)

예산군 고시 제 2023-114호

주 택 건 설 사 업 계 획 **7차 변경 승인 고시**

중봉건설주식회사 대표 신경식이 시행하는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3BL (삽교읍 목리 88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를「주택법」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4일

**예 산 군 수**

1. 사 업 명 : 내포신도시 RH3BL 중흥S클래스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 : 중봉건설주식회사 대표 신경식
  - 나.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04
3. 사업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RH3BL (목리 884번지)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업계획6차변경승인	사업계획7차변경승인
주택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54,658.40㎡</li> <li>○ 연 면 적 : 174,991.0766㎡</li> <li>○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li> <li>○ 공급방법 : 민간분양</li> <li>○ 사업규모 : 주15동/부8동, 1,12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형(전용면적 59.9914㎡) : 285세대</li> <li>- 73형(전용면적 73.9822㎡) : 245세대</li> <li>- 84형(전용면적 84.9642㎡) : 590세대</li> </ul> </li> <li>○ 사 업 비 : 366,720,413천원</li> <li>○ 사업기간 : 2021.10.04.~2024.09.03.</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지면적 : 54,658.40㎡</li> <li>○ 연 면 적 : 174,991.0766㎡</li> <li>○ 주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li> <li>○ 공급방법 : 민간분양</li> <li>○ 사업규모 : 주15동/부8동, 1,12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9형(전용면적 59.9914㎡) : 285세대</li> <li>- 73형(전용면적 73.9822㎡) : 245세대</li> <li>- 84형(전용면적 84.9642㎡) : 590세대</li> </ul> </li> <li>○ 사 업 비 : 366,720,413천원</li> <li>○ 사업기간 : 2021.10.04.~2024.09.03.</li> </ul> <p><b>[첨부] 변경세부내역</b></p>

5. 사업승인일 : 2014.09.23. (2014-도시재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6. 변경승인일 : 1차변경(2014. 2. 24), 2차변경(2020. 6. 9), 3차변경(2021. 7. 9.),  
경미한변경1차(2021. 9. 17.), 4차변경(2022. 5. 11.), 5차변경(2022. 6. 27.)  
6차변경(2022. 11. 29.)
7.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항 : 주택법 제19조에 의한 의제

■ 변경 상세내역(건축)

□ 설계변경 세부항목

구 분	변경 내용	변경전	변 경 후	변경 사유	비고	도면번호
1.형별 성능	1 단위세대 단열재 상향	압출법 보온판1호 기포콘크리트0.4폼	경질우레탄보온재 2종2호 기포콘크리트0.5폼	단열성능 상향 및 입주자 편의		1A041~044 1A121~126
2.주동	2 주동 옥탑 구조물	-	구조계산 반영 및 옥탑 구조물 ,난간 추가	구조계산 및 협의 내용 반영		1A671~ 1A691
3.지하 주차장	3 지하주차장 PC 구조 영역 변경	-	PC 구조 영역 변경	구조안전성 증가		2S121

예산군 공고 제2023-858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수용재결신청서 열람 공고통지하였으나 송달대상자의 수취인 주소·거소불명·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 예 산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예산군수

다. 사 업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후사리 산73번지 일원(예당관광지 내)

라. 사 업 량 : 착한농촌 팜센터, 착한농촌 지원센터, 숙박시설, 치유농장·정원·숲, 전망대 등

마. 사 업 기 간 : 2017년 ~ 2024년

2. 공고기간 : 2023. 5. 10. ~ 2023. 5. 24.(15일간)

3. 공시송달 내용 : 토지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안내 통지 및 공고문

4. 공시송달 사유 : 거소불명, 폐문부재 등

#### 5. 공시송달 대상

소재지	지번	지목	편입면적 (㎡)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응봉면 후사리	179	전	76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장석○	
응봉면 후사리	산78-2	임야	99	경기도 광명시 철산로	박인○	

6. 기타사항

-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 담당자(☎041-339-73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 공고 제2023- 835호

##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4일

### 예 산 군 수

1. 조례(규칙)명 :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이유

- 학교급식에서 나아가 공공급식으로 확대 및 공공급식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공공급식 우선 사용의 유인을 제공하여 지역내 농특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 법규관리의 효율성과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개별적으로 제정·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급식에 대한 범위를 넓혀 공공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자 함.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가. 지역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3조)
- 나.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3조)
- 다. 공공급식·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제22조)
- 라.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 ~ 제27조)

마.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 제33조)

4. 입법예고 기간 : 2023. 5. 4. ~ 5. 24.(20일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기관, 단체는 2023년 5월 2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농정유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예산군청 농정유통과 먹거리지원팀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오가면 윤봉길로 1891-19(우편번호 : 32425)

- 전자메일 : j961206@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8272, 팩스: 041)339-7559

라. 제출방법 : 우편, 메일, 전화, 팩스(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발췌서 1부. 끝.



**[붙임 1]****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 례 명 :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학교급식법」 등에 따라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예산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며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증진으로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4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축·수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 「축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

5. “지역농산물”이란 예산군에서 생산된 안전한 농산물과 이러한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하여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6.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이동 거리가 가깝고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원료의 가공·유통과정 중 방부제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 지방이 없는 가공품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급식경비”란 공공·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지원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4. 제23조에 따른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 제2장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3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방법·규모·내용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 기

반 조성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지원과장, 교육체육과장, 농정유통과장 및 예산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예산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예산사무소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
3. 예산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공무원 1명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1명
5.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6.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3명
7. 생산자단체 추천한 사람 3명
8.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명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품위를 훼손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하고자 하면 의결을 거쳐 해촉한다. 이 경우 해촉되는 위원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로 관계인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례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①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운영위원회: 지원센터의 운영 전반,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및 그 밖에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물품가격결정위원회: 물품의 공급 방법, 업체선정, 물품선정, 단가결정 등에 대한 심의

②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2조(소위원회 운영)** ①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장 공공급식 지원

**제14조(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5조(공공급식 실행계획 수립)** ① 군수는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생산 및 공급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가공·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별 지원 방법
4.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 체험 및 교육 기



## 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실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으로 반영하고,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16조(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23조의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우리 지역 외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 또는 바우처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군수는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미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지원 및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 제4장 학교급식 지원

**제18조(학교급식 지원 대상)** ① 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급식을 실시하는 시설
4. 그 밖에 예산군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의 지원대상 중 별도의 지원으로 급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3. 급식재료로 사용되는 친환경 농·축·수산물과 우수식재료의 공급 및 관리 방안
4.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 안전성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학교급식 지원방법)** ① 군수는 급식경비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의 경우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곳을 이용하여 공동조달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는 초·중·고·특수학교와 유치원은 교육장을 통하여 지원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제21조(학교급식 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매년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유치원·학교의 원아·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원아·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및 식재료 등의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학교급식 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지원대상 시설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초·중·고·특수학교 및 유치원은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밖에 경우에는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5장 공공급식지원센터

**제23조(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 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냉장 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5.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추진
6. 위원회의 심의 결정 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 지원업무 협의
7. 그 밖에 공공급식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산물의 소비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인근의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4조(생산자의 의무)** ①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적합한 식재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 농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지원센터의 식재료 품질기준에 맞는 원재료 등을 지원센터와 협의한 가격에 공급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식재료를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별도 지정된 집하장으로 물품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지원센터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생산자는 지원센터가 실사를 요구할 때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및 농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5조(공급자의 의무)** ① 공급자는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지원대상자별 공급 목록에 따른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재고의 파악과 지원센터로부터 확인한 품목 및 물량에 따른 공급계획을 파악하여 절품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지원센터에 등록된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매입하고 지정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공급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라 공급 비용 및 생산자에게 매입한 식재료 값을 정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지원센터의 관련 장부 열람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배송자의 의무)** ① 배송자는 지원센터에 납품된 식재료를 배송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정한 장소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여야 한다.

② 배송자는 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지정 차량의 설비

기준을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

③ 배송자는 건강진단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청결한 복장(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장갑 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배송자는 학교 검수 담당자의 입회하에 대면 검수를 받아야 하며, 검수 확인서를 받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배송자는 식재료가 배송 중에 변질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원센터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경비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급식경비의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에게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급식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급식비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 제6장 특별회계

**제28조(특별회계의 설치)**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특별회계의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지원센터를 통하여 구입한 식재료의 공급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제30조(특별회계의 세출)**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센터 운영 관련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제31조(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산업건설국장
2. 분임징수관: 농정유통과장
3. 재무관: 산업건설국장
4. 분임재무관: 농정유통과장
5. 물품관리관: 농정유통과장
6. 물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7. 지출원: 공공급식 담당팀장
8. 수입금출납원: 학교급식 담당팀장
9.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공공급식 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제32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준용)** 급식경비 보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산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 예산군 공공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의결 사항
2.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예산군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심의·의결 사항



**[붙임 3]관계법령****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 [법률 제18445호, 2021. 8. 17., 타법개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 학교급식법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39호, 2021. 12. 28., 일부개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 12. 28.>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 및 식재료 등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예산군 공고 제2023- 852호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2. 개정이유

-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서식을 기준 마련하고,
- 상위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 개정

- (현 행)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 (개정안)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나.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제3조)

다. 시장 사용 허가신청 및 사용료징수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4. 입법예고 기간 : 2023. 5. 10. ~ 5. 30.(21일간)

### 5. 의견제출

- 이 폐지규칙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3년 5월 30일까지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다.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우편번호 32435)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경제과 경제팀
- 전자메일 : cdw92@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7254, fax : (041)339-7259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 【붙임 2】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변경신청) ①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장의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허가신청 등)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시장의 사용 허가신청 등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예산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시장의 기능이나 정상화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의 신청을 허가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의 상시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부과·징수하고 일시 사용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징수 한다. 다만, 조례 제37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관리하는 경우 징수 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시장의 일시 사용료는 읍·면 수입금 출납원이 현금으로 징수하되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를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수입금 출납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시장사용료 징수 전표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사항은 이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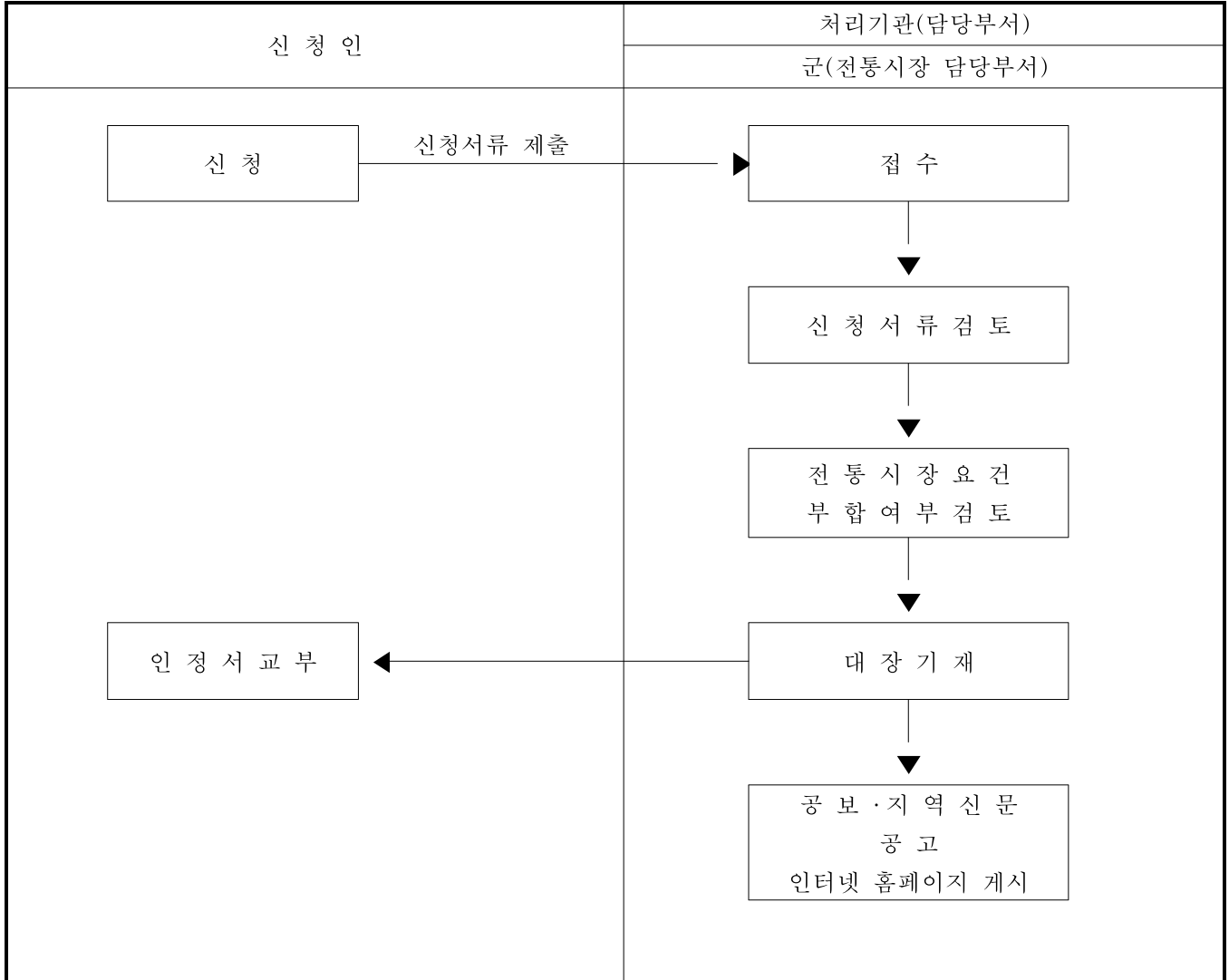
(앞면)

<b>전통시장 변경 신청서</b>					처리기간
					14일
①시 장 명				②대표자 성명	
③소 재 지				④등록일자	
⑤개설일자 (건축일자)		⑥용도지역		⑦도시계획 시설명칭	
⑧변경신청 내용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⑨변경사유					
⑩변경연월일					
<p style="text-align: center;">「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전통시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시장관리자)  (서명 또는 날인)</p>					
<b>예산군수</b> 귀하					
구비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총회 회의록, 규약 등) 2. 변경구역 안의 상인 및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변경사항 발생 시에 한정함) 3. 변경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변경사항 발생 시에 한정함) 4. 변경구역 안의 전체상인의 명부 (변경사항 발생 시에 한정함) 5. 전통시장(인정시장) 인정서(원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뒷면)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 1. 골목형상점가명:
- 2. 상 인 회 명:
- 3. 대 표 자 성명:
- 4. 소 재 지:
- 5. 상점가 면적: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직인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요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화번호		
	규모	토지 면적:      m <sup>2</sup> , 건물 연면적:      m <sup>2</sup> , 영업장 면적:      m <sup>2</sup> , 점포 수:      개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sup>2</sup> , 기타:		

상인 조직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설립일	회원 수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예산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1조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받으려는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1부 4.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4호서식]

<b>시장재산</b> <input type="checkbox"/> 신규사용 <input type="checkbox"/> 변경사용 <b>신청서</b> <input type="checkbox"/> 계속사용 <input type="checkbox"/> 사용폐지.휴업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주 소						
신청내용	⑤ 시 장 명						
	⑥ 소 재 지						
	단지	동	층 호	부 지 (㎡)	건 물		용 도
					구 조	면 적(㎡)	
	⑦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⑧ 사 용 료		유상, 무상				
⑨ 변경(폐지,휴업)사항							
<p>「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p>							
<b>예산군수 귀하</b>							
※ 구 비 서 류 1. 도면(사용하고자 하는 재산명시) 2. 인감증명(확인으로 가름할 수 있음) 3. 허가증원본(계속사용,변경사용허가의 경우)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5호서식]

## 시 장 재 산 사 용 허 가 서

사 용 자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상 호						
	④ 주 소						
허 가 재 산 의 표 시	⑤ 시 장 명						
	⑥ 소 재 지						
	단지	동	층 호	부 지 (㎡)	건 물		용 도
					구 조	면 적(㎡)	
	⑦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간)				
	⑧ 사 용 료		유상, 무상				
⑨ 변경(폐지,휴업)사항							
⑩ 허 가 조 건 이면참조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장재산의 사용(계속, 변경, 폐지, 휴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예 산 군 수

[별지 제6호서식]

<u>NO.</u>	시 장 사 용 료 징 수 전 표  일 금 :                      원 정                      5cm  2000.                      .                      .  예 산 군 ○○읍(면) 수 입 금 출 납 원 인
------------	---

10cm

[별지 제7호서식]

## 시장사용료 징수전표 수불부

월일	구분		권 종 별(금 액)					결 재	
			계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원권	수입금 출납원
	수입	매 수							
		금 액							
	수입	매 수							
		금 액							
	수입	매 수							
		금 액							



**【붙임 1】 관계법령****□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제9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골목형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군수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 시장 및 상점가에서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군 소유의 토지와 그 정착물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고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법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경우에는 5년 단위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고,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제36조(사용료)** 공설시장의 부지 및 시설 사용자는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료의 부과·징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공설시장을 위탁관리 하는 경우 징수방법은 수탁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1. 상시사용료는 사용허가일 다음날부터 계산하되, 사용허가 전부터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할 것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휴업을 한 때에도 사용료는 징수할 것
3.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나 폐지일까지 일할 계산할 것
4.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징수할 것
5. 정기시장 사용자 및 시장의 일시사용자 사용료는 매 회당 징수할 것
6. 사용료 산출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은 1제곱미터로 할 것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예산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추후 관련 세부계획 또는 시행계획이 있어야 비용이 정해짐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음.

**4. 작성자 : 경제과장**